



#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기획업·제작업)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자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



## 종사자가 알아야 할



#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 Contents

## 01 개요



- 배경 05
- 필요성 및 기대효과 05
- 들어가기 전에 06

## 02 대중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령



- 대중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령 08

## 03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 계약을 체결할 때 13
- 촬영(제작) 중 16
- 촬영(제작) 완료 후 23

## 04 제작 현장 체크리스트



- 제작 현장 체크리스트 25
- 📖 부록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대상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교육 지침 26
- 📖 부록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27

# PART 01

## 개요

### 1 배경



-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두는 등 우리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계약 체결의 어려움을 겪거나, 그로 인해 활동·정산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며, 대중문화 예술 참여 과정에서 부당한 노동행위나 인권침해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 ✓ 이러한 실태를 조사, 연구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 보호자, 대중문화예술제작업 종사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하는 안전한 대중문화예술 제작환경 구축을 목표로 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습니다.

### 2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최근 미디어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아동·청소년들의 미디어 출연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방송과 영화뿐 아니라 OTT, 웹드라마, 유튜브 등 출연 가능한 채널이 늘고, K-POP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연기자과 가수를 준비하는 아동·청소년 지망생과 아이돌 연습생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콘텐츠 출연 기회가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종사 현황과 노동환경 파악 등 권익보호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 ✓ 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투명한 대중문화예술인 용역제공, 콘텐츠 제작 스태프의 인권보호 인식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권익을 보호받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환경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들어가기 전에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수행 주체별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① 대중문화예술산업(「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을 제작하거나(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 제외, 보도 및 교양 방송 영상 제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

### ② 대중문화예술용역(「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

### ③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10호)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연습생)

### ④ 대중문화예술제작업, 제작업자(「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5호)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일을,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사람

### 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기획업자(「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7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일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사람

### ⑥ 대중문화예술사업자(「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8호)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사람

### ⑦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9호)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 ⑧ 보호자

민법상 미성년자의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 친권자인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미성년 후견인)

### ⑨ 청소년보호책임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아동·청소년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PART 02

## 대중문화예술 분야 주요 법령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 산업 내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사항 및 보수에 대한 책임,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를 위한 대원칙 및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기획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대중문화 예술인의 권리보장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주요 조항

**제19조(청소년보호 원칙)**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20조(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 예술제작물의 제작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중문화 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 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중문화 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25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 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독자적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보수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계약 상의 보수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 직업적 권리의 증진,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 보장과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서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며, 예술인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1 계약을 체결할 때

-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자신이 당사자인 계약에 대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 ✓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보호자 등은 계약체결 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 ✓ 아동·청소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한 내용을 명시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사업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 ✓ 계약 당사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 ✓ 계약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 ㄴ. 청소년보호책임자 배정에 관한 사항
  - ㄷ.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제공을 위해 합숙을 하는 경우, 합숙 장소, 기간, 환경,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침해사례

-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다양한 영역 중 K-POP 아이돌 그룹과 소속사 간의 계약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주로 '정산' 및 '계약 불이행'을 둘러싼 이슈가 대다수
  - 사회적, 경제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계약·정산 등과 관련한 실무 처리에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부속합의서) 등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 PART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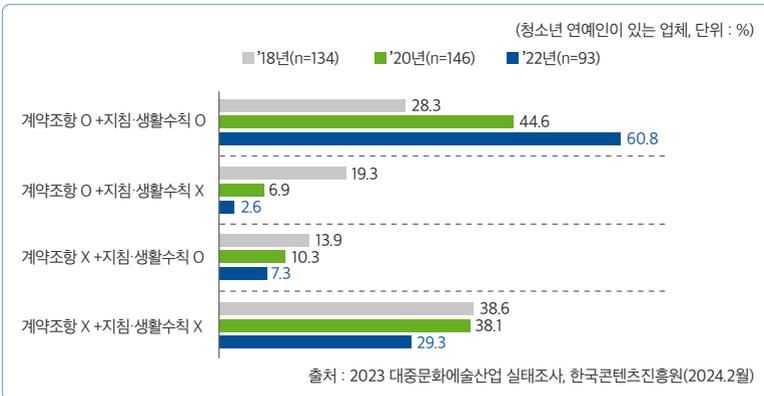
##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표준계약서·부속합의서 인지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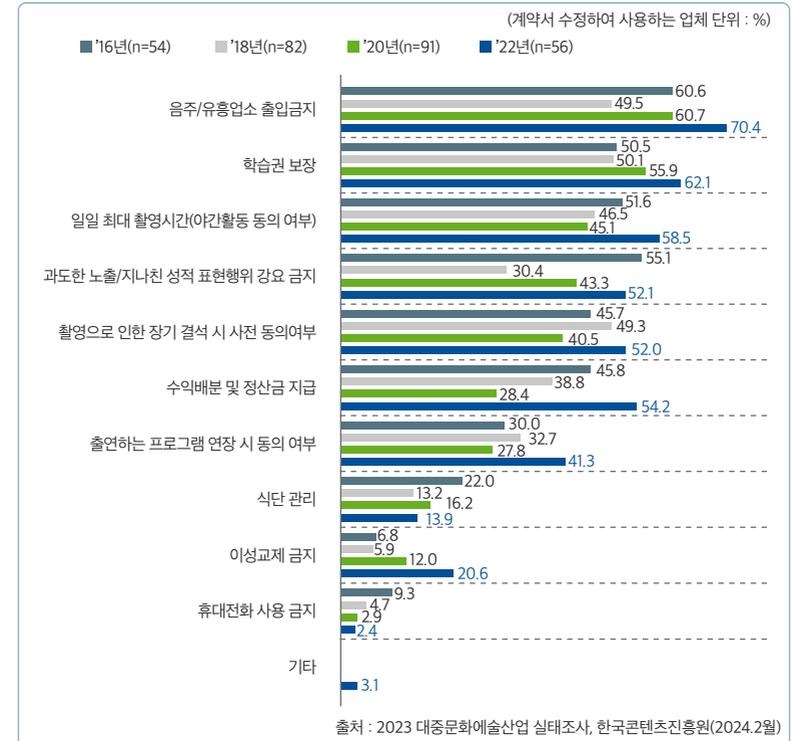


-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과 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부속합의서) 이외 별도 지침이나 생활수칙 등을 두는 경우에도 청소년의 학습권, 건강권, 재산권 등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 청소년 연예인 별도 계약(지침·생활수칙) 현황 >



< 청소년 연예인 별도 계약(지침·생활수칙) 현황 >



## 촬영(제작) 중



### 용역시간

####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용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용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휴일은 학교의장이 심의를 거쳐 정하는 날과 토요일, 공휴일 및 여름·겨울 방학)

#### 15세 이상 아동·청소년

-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단,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용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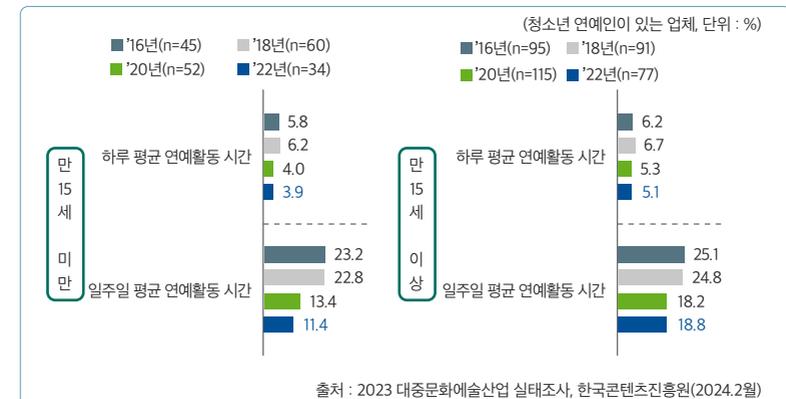
#### 공통사항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이 국외 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용역제공 시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야간 용역제공은 여전히 제한).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보호자 등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이 동시에 하나 이상의 용역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 보호자 또는 기획업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여 용역제공을 하지 않도록 제작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제작업자는 이를 고려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 침해사례

- ✓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나이를 '15세' 기준으로 용역제공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함께 촬영하는 경우 방송 편성에 따른 야간 촬영이나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 아동·청소년은 용역제공 시간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평균 연예활동 시간 >



## 학습권

- 학습권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 본인을 비롯한 보호자, 사업자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성장을 위해 학습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 용역제공 시간 예외에서 학습권 보호 조치

####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①·② (생략)
-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용역 제공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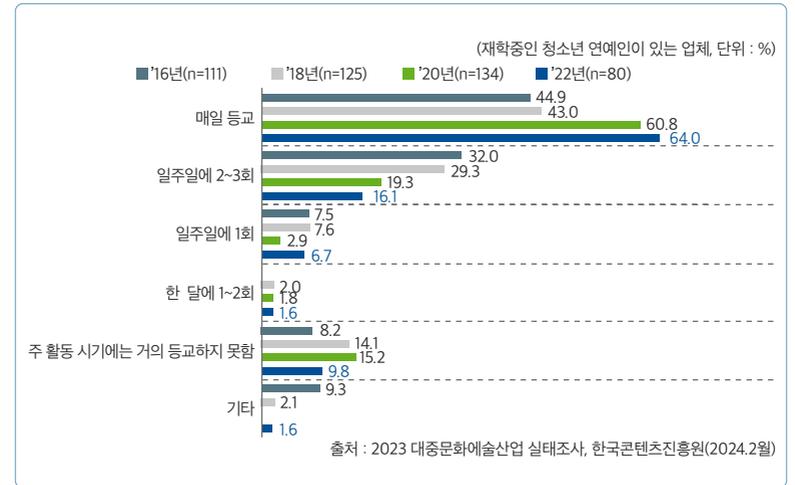
####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①·② (생략)
-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용역 제공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침해사례

- ✓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외 활동을 위한(장거리)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지식 습득, 창의성 등 자아 발달, 학업성취를 강조하기보다 출석 일수를 맞추는 정도로만 지켜지는 경우도 발생

< 주 활동 시기의 등교 횟수 >



## 건강권

### 신체적 건강

- 대중문화예술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영·유아, 취학단계, 학기 중 여부 등 아동·청소년의 성장, 발달 단계 특성을 고려하여 용역제공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촬영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지키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보호자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시간, 대기시간,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보호자와 촬영 일정을 상의해야 합니다.

### 정신적 건강

- 대중문화예술 제작산업 특성상 아동·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협업을 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있고, 미디어를 통해 수시로 이미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연기자 뿐 아니라 연습생이나 아이돌 가수들의 경우 경쟁이 심한 환경이 주는 불안감, 대중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우므로 정신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정서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침해사례

- ✓ (신체적 건강) '건강권'의 기본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 밖에 성인 스태프들과 분리되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함
- ✓ (정신적 건강) 이른 나이에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들은 '자아'와 '배역'을 혼동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신이 맡은 배역이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원치 않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극심한 식단 제한을 하는 등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 인격권

- 성폭력 및 성희롱을 금지하고, 건강과 안전 등 급박한 사안이 아니라면 신체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 폭언 및 욕설을 비롯한 폭력적인 언행을 금지합니다.
- 물리적/정신적 체벌을 금지하고 외모 등을 평가하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연락할 경우 보호자를 통하거나 보호자가 동의한 연락처로 연락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공개하는 경우 필요 이상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범죄(eg.허위 정보 및 딥페이크 등 가공 이미지의 유포 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시로 관련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수집하는 정보는 필수적인 것으로 제한하며 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스스로 본인 및 가족의 개인 정보를 쉽게 적도록 하지 않습니다.

### 침해사례

- (보편적 인격권) 아동·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협업하는 과정에서 폭력적 위험 요소가 있는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으며, 언어적·물리적 폭력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취약성과 직결되므로 적극적인 보호 조치 필요
  - 소속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합숙'이라는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적절한 조치 이행 필요
- (성보호) 용역제공의 형태 및 연령, 성별에 관계 없이 대중문화예술인은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하며, 성범죄는 단순한 성적 일탈의 문제가 아닌 권력관계가 반영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사생활 보호) 아동·청소년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소속사로부터 사생활을 통제 받는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으며,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사생활의 보호와 감시의 경계에 위치할 우려
  - 아이돌 그룹의 경우, 가장 대표적 사례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자유와 인간관계 형성 등 사회활동이 어려워져 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놓일 수 있음



## H) 촬영(제작) 완료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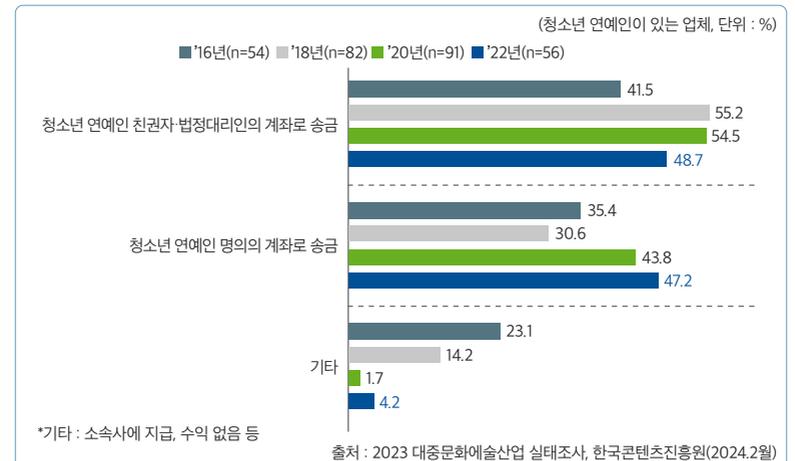
### 재산권 등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독립된 주체로 용역제공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급받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 사업자의 공통된 인식이 필요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본인이 수익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수익금은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인이 됐을 때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경제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 침해사례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용역제공을 통해 대가를 받고 있지만, 그 수익금은 보호자에 의해 관리받는 경우도 많음
  - 극소수 사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실질적 가장이 되거나, 보호자 등이 아동·청소년과 상의 없이 재산을 사용 및 처분해 논란을 빚게 되는 사례가 관찰되기도 함

< 청소년 연예인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 지급방식 >



# PART 04

## 제작 현장 체크리스트

###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작 현장 체크리스트 - 제작업자용

검토해야 할 항목	체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 보호를 위한 <b>스태프 교육을 실시</b>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b>현장 담당자</b> 가 지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보호자에게 <b>계약 내용 등의 사항을 쉬운 언어로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b> 를 얻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당일 현장의 <b>촬영(구역)시간</b> 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적절한가? → 15세 미만은 1주일에 35시간 이내 / 15세 이상은 1주일에 40시간 이내	<input type="checkbox"/>
 현장에 <b>물리적인 위험요소</b> 는 없는가? → 예 : 위험 설비, 폭력, 청소년 유해 콘텐츠·물건·약물·약물·업소 등	<input type="checkbox"/>
 현장에 <b>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b> 는 없는가? → 예 : 학대, 욕설, 사행심 유발, 외모 평가, 괴롭힘 등	<input type="checkbox"/>
 현장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b>보호자 연락처는 모두 확인</b> 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b>화장실/대기실/휴게공간</b> 은 확보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현장에 <b>식사를 할 장소</b> 가 있고, 해당 장소를 고지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현장에 <b>안전한 탈의실</b> 이 확보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제작 등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b>건강권,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b> 을 보장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제작 등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b>개인정보 노출</b> 이나 <b>과도한 사생활 침해</b> 등 위험요소는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b>용역제공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b> 를 지급하는가?	<input type="checkbox"/>

※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필수 준수, 그 외 사항에 대하여도 가급적 모두 준수하도록 권고

## 부록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대상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교육 지침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 (1) 기획·제작업자는 아동·청소년들이 상처받기 쉽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 (2) 아동·청소년 부모의 명성(악명) 또는 촬영과 무관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 (3) 쉽게 잘 믿고 잘 속는 아동의 특성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 (4) 사전 동의 없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촬영·녹음해서는 안 되며, 그 외 방법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5) 제작물 스태프와 아동·청소년의 소통은 항상 공개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 (6) 촬영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닦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7) 건강, 안전과 관련된 급박한 상황 또는 보호자(청소년보호책임자)가 현장에 함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동·청소년과 스태프 간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된다.
- (8) 출연에 따른 (예 : 드라마 캐릭터) 괴롭힘 등 프로그램 방영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 (9) 아동·청소년 혹은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금전적으로 유인해서는 안 된다.
- (10)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자(부모 또는 부모 대리자 등)가 프로그램의 특성과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후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11) 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청소년들이 연기해서는 안 되는 장면이나 내용을 명시하여 전달해야 한다. (예 : 과도한 욕설이나 폭력, 약물이나 범죄, 과도한 노출, 특정한 대상에 대한 과도한 편견이나 혐오를 담고 있는 표현의 금지 등 아동과 청소년들이 피해야 할 요소)

## 부록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운영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tp://ent.kocca.kr> 전화번호 1588-2594

#### [대중문화예술사업자]

**Q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여부 조회, 등록기준 및 절차 등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메인 화면에서 [등록기업 검색], [기획업 등록 안내]

**Q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메인 화면에서 [종사경력증명신청]

#### [대중문화예술인]

**Q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업체 신고방법 등은 어디서 문의할 수 있나요?**

**A** 메인 화면에서 [미등록 기획사 신고]

**Q 심리상담 등 지원이 필요할 때는 어디로 연락할 수 있나요?**

**A** 메인 화면에서 [심리상담 신청] ※연예인, 연습생 심리상담 지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1:1대면 상담 / 상담 비용 : 무료

#### [공통]

**Q 대중문화예술 관련 법정 교육 정보는 어디서 안내받을 수 있나요?**

**A** 메인 화면에서 [교육수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정, 등록 교육)/대중문화예술인(성, 소양 교육)

**Q 법률지원이 필요할 때는 어디로 연락할 수 있나요?**

**A** 메인 화면에서 [법률자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유선 또는 1:1대면 상담 / 자문 비용 : 무료